2026.11.09.

KIRI 리포트

| 포커스 |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즉시형 장기요양연금 도입 필요성과 과제

송윤아 연구위원

요 약

○ 고령화로 장기요양 수요와 관련 비용이 늘면서 공적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공적 보장을 확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급여, 재가 간병비 등 공적 급여 밖의 돌봄비용에 대한 사적 대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정부는 고령층의 돌봄비 등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택연금,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탁 등 보유자산의 생전 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영 보험회사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그러나 기존 수단은 자산의 현금화나 돌봄 필요 발생 전의 사전 대비에 집중되어 있어, 이미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가 돌봄 기간의 불확실성을 보험회사 등에 이전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임

○ 영국의 즉시형 장기요양연금은 이미 돌봄이 필요해진 시점에 일시납으로 가입하면 개인별 건강상태와 기대여명을 반영한 연금을 사망 시까지 지급하는 종신연금임. 사전적립형 상품이 시장에서 철수한 뒤 사실상 유일한 민간 장기요양 재원 상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최근 공급자가 늘고 있음

○ 사전적립형 장기요양보험 중심으로 발전해 온 미국에서도 사전적립형 시장이 위축되고 메디케이드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이미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을 위한 즉시형 상품이 대안으로 출시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이미 돌봄이 필요해진 중산층이 돌봄 장기화 위험을 이전할 수 있도록 즉시형 장기요양연금 도입을 검토하고, 세제 등 정책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보험회사에는 일반 연금시장과 사전적립형 시장 모두에서 배제되던 돌봄 필요 고령층을 새로운 고객층으로 편입할 기회가 되며, 이를 위해 손상체 연금의 인수심사 기반과 직접 지급 체계를 갖춰야 함

1. 서론

○ 정부는 고령층의 돌봄비 등 노후생활비 마련을 위해 주택연금,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탁 등 보유자산의 생전 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장기요양보험이 판매되고 있음

- 고령화로 장기요양 수요와 관련 비용이 증가하면서 공적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공적 보장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재가 간병비 등 돌봄비용에 대한 사적 대비의 필요성이 커짐

○ 그러나 기존 수단은 자산의 현금화나 돌봄 필요 발생 전의 사전 대비에 집중되어 있어, 이미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가 돌봄 기간의 불확실성을 보험회사 등에 이전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적임

- 주택연금은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를 반영하지 않으며,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보험계약에 따라 유동화할 수 있는 금액과 지급 기간에 제약이 있고, 신탁은 자산 관리·집행 기능에 그쳐 돌봄 위험 자체를 이전하지는 못함
- 판매 중인 장기요양보험은 돌봄 위험을 보험회사에 이전할 수 있지만, 돌봄 필요 발생 전에 가입하고 보험계약을 유지해야 하므로(이하 '사전적립형')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돌봄이 필요해진 고령층은 이용하기 어려움

○ 영국의 즉시형 장기요양연금은 이미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의 재원 공백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사전적립형 장기요양보험 중심으로 발전해 온 미국에서도 2016년 이후 유사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음

- 즉시형 장기요양연금(Immediate Needs Annuity; INA)은 돌봄 필요가 발생한 시점에 일시납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망 시까지 연금급여를 지급받아 돌봄비용을 충당하는 손상체 종신연금(Impaired life annuity)의 일종임
 - 손상체 종신연금은 가입자의 건강상태와 기대여명을 반영해 연금액을 산정하는 종신연금으로, 기대여명이 짧을수록 예상 지급 기간이 줄어들어 동일한 보험료로 더 높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음

○ 본고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즉시형 장기요양연금의 도입 배경, 상품 구조, 시장 현황과 한계를 살펴보고, 국내 사적 노후재원 수단과의 비교를 통해 국내 도입의 필요성과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영국과 미국은 공적 장기요양 지원이 자산조사에 기반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장기요양 비용의 상당 부분을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로, 이에 대응하는 사적 보장 수단으로 미국은 1980년대, 영국은 1990년대 초부터 민간 장기요양보험이 판매됨

2. 영국의 즉시형 장기요양연금

○ 영국은 1993년 지역사회돌봄 개혁 이후 자산조사 기반의 돌봄 지원체계가 정착되면서 자기부담자가 증가하였고, 즉시형 장기요양연금이 주요 민간 돌봄비용 조달 수단으로 자리 잡음

- 1993년 「NHS and Community Care Act 1990」가 시행된 이후 지방정부의 돌봄 필요 평가와 자산조사를 통한 지원체계가 정착되면서, 돌봄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스스로 부담하는 자기부담자(Self-funder)가 증가함

- 잉글랜드에서는 2026/27년 기준 자산이 £23,250를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시설돌봄 비용에 대한 지방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시설 입소 시에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주택 자산도 평가 대상이 됨

• 자기부담자는 장기 돌봄에 따른 비용과 기간의 불확실성으로 자산 소진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이에 대응해 1990년대 초 사전적립형 장기요양보험과 즉시형 장기요양연금이 함께 판매되기 시작함

• 이후 사전적립형 보험은 보험위험 산정의 어려움과 낮은 가입 유인으로 시장이 위축되었으며 2004년 주요 보험회사들이 철수하기 시작하면서 즉시형 상품이 민간 장기요양 재원조달 수단으로 남게 됨

○ **즉시형 장기요양연금은 이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일시납 보험료를 내고 사망 시까지 연금을 지급받아 돌봄비용을 충당하는 손상체 종신연금으로, 가입자의 건강상태와 기대여명을 반영해 연금액을 산정함**

•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으로 가입 시점에 이미 돌봄을 받고 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태여야 하며, 해당 돌봄 필요가 사망 시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을 통한 가입도 가능함

• 보험회사는 가입자의 건강상태와 기대여명을 개별 심사하여 연금액을 정하므로, 평균 사망률을 적용하는 일반 종신연금과 달리 예상 지급 기간이 줄어들어 동일한 보험료로 더 높은 연금액을 기대할 수 있음

• 연금급여는 원칙적으로 등록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지급되며, 연금액이 실제 돌봄비용보다 적으면 가입자가 부족분을 부담하고 초과하면 차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함

- 지역별 규제기관에 등록된 요양시설 또는 재가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연금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되며,[1] 돌봄비용을 초과하여 가입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차액에는 세금이 부과됨

• 주요 옵션으로는 매년 일정 비율 또는 소매물가지수에 연동하는 연금 증액, 조기 사망 시 보험료 일부를 반환하는 자본보호, 계약 체결 후 1~5년 뒤 연금 지급을 개시하는 지급 연기 등이 있음

○ **즉시형 장기요양연금은 소수 보험회사가 공급하는 틈새시장이지만, 최근 신규 진입이 이어지면서 시장이 유지되고 있으며 가입자·보험회사·정부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음**

• 개별 의료심사 역량과 돌봄 기간에 대한 장수위험 부담 때문에 소수 전문 보험사가 공급해 왔으나, 공급자는 2013년 2개 사(Friends Life, Partnership)에서 2026년 5개 사(Aviva, Just, L&G, National Friendly, British Friendly)로 늘었고, 재보험사의 심사 지원과 공동 견적 절차 도입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있음

• 가입자는 향후 돌봄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확정해 자산 소진의 위험을 줄이고 상속 가능한 자산을 예측할 수 있지만, 조기 사망 시 자본보호 옵션이 없으면 납부한 보험료를 회수하지 못함

• 정부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지급되는 연금급여에 세제 혜택을 주는 한편, 자기부담자의 자산 소진과 지방정부 지원체계 편입을 늦춰 공적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금융자산 20만 파운드를 가진 75세 남성이 돌봄비용의 50%를 보장하는 즉시형 연금에 가입하면, 자산을 소진해 지방정부 지원을 받을 확률이 15.9%에서 9.6%로 낮아지고, 전체 돌봄비용 중 정부 부담 비중은 15.1%에서 6%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됨[2]

1) 영국은 미래의 질병·장애 위험에 대비한 보험의 급부를 비과세하나(ITTOIA 2005 제735조), 즉시형 장기요양연금은 위험이 이미 발생한 뒤 가입하므로 이 조항을 적용받지 못함. 이에 같은 돌봄비 재원이 사전 가입 여부에 따라 달리 과세되지 않도록 별도 조항(제725조)을 둠(HMRC, Insurance Policyholder Taxation Manual IPTM6200)

- 보험회사는 예상 지급 기간이 짧아 일반 종신연금에 비해 장기적인 사망률 개선과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은 작은 반면, 개인별 기대여명 추정 오차에 따른 위험은 큼

○ 다만, 공적 지원제도의 불확실성, 공적 지원과의 대체 관계, 가입자의 잔여 위험 부담, 보험회사의 인수위험 등으로 인해 즉시형 장기요양연금의 실제 이용률은 잠재 수요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잉글랜드 요양시설 입소자의 37%가 돌봄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자기부담자이고,[3] 자기부담자의 40%는 즉시형 연금을 구입할 여력이 있고 가입 시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추정되나[4] 즉시형 시장 규모는 이에 미치지 못함
- 이는 개인이 평생 부담하는 돌봄비용을 £86,000으로 제한하고 지방정부 지원 자산 기준을 £100,000으로 상향하는 개혁안이 입법·연기·폐지를 거치면서 소비자가 상품 가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임[5]
- 또한 자산 소진 후 지방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민간보험 가입 유인이 낮으며, 조기 사망 시 보험료를 회수하기 어렵고 돌봄비 상승이나 돌봄 강도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도 가입자가 부담할 수 있음
- 아울러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개인별 의료심사를 통한 기대여명 추정에 의존하므로 추정 오차에 따라 손익 변동이 커질 수 있으며, 실제 생존기간의 편차도 큰 상황에서 시장 규모가 작으면 위험을 충분히 분산하기 어려움[6]

〈표 1〉 영국·미국·우리나라의 공적 장기요양 지원

구분	영국(잉글랜드)	미국	우리나라
제도 성격	조세 기반 지방정부 사회돌봄 (Care Act 2014)	보편적 공적 장기요양제도 없음, 메디케이드가 사실상 담당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년 도입)
재원	일반조세, 지방세	연방·주 정부 조세	장기요양보험료, 국고 지원, 본인부담
운영 주체	지방정부	주 정부(연방 기준 내 주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기준	소득·자산 심사, 요양필요도 평가 (잉글랜드의 자산상한 £23,250)	소득·자산 심사, 요양필요도 평가 (소득상한: 월 $2,829, 자산상한: $2,000)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자, 등급 판정, 자산조사 없음(보편 급여). 저소득층은 본인부담 감경·면제
주택 처리	시설 입소 시 자산에 포함(배우자 거주 등 예외). 재가돌봄은 미포함	일정 한도까지 자격 판정에서 제외, 2028년부터 주택 지분 100만 달러 상한. 사망 후 유산 회수	해당 없음 (자산조사 없음)
본인부담	자산·소득에 따라 0~100%	자산·소득에 따라 0~100%	재가 15%, 시설 20%(감경 40·60%, 의료급여 수급자 면제)
급여 밖 비용	자기부담자는 지방정부 요율보다 높은 요금 부담	기준 외 서비스는 본인 부담	식재료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와 급여한도 초과분

주: 메디케이드 자산·소득 심사 기준은 2024년 기준으로, Medicaid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자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기준 초과 시에는 자산 소진(Spend down) 또는 의료비 기반 예외 경로(Medically Needy Pathway)를 통해 조건부 자격 취득이 가능함
자료: 저자가 작성함

2) Friedberg, L. et al.(2025), "The Immediate Needs Annuity and Long-Term Care Insurance", *TIAA Institute Research Dialogue*, No. 222
3)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2023. 7. 6.), "Care homes and estimating the self-funding population, England: 2022 to 2023"
4) Forder, J.(2011), "Immediate Needs Annuities in England", PSSRU Discussion Paper 2776, University of Kent
5) Bridgehead Communications(2026. 9. 7.), "England social care cost cap timeline"; GOV.UK(2021), "Adult social care charging reform: further details"
6) Friedberg, L. et al.(2025), "The Immediate Needs Annuity and Long-Term Care Insurance", *TIAA Institute Research Dialogue*, No. 222

3. 미국의 즉시형 장기요양연금 출시

○ 미국은 공적 지원 구조, 시장 인프라가 모두 사전적립형 장기요양보험에 맞춰 발전해 왔음

- 미국 민간 장기요양보험은 대부분 실제 돌봄비를 보상하는 실손형으로, 일당 한도와 보장 기간(2~5년 등) 또는 총 보장 한도 안에서 지급하여 돌봄 장기화 위험을 일부만 이전함
- 영국과 미국 모두 재산을 소진하면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영국은 요양시설 입소 시 주택을 자산조사에 포함해 주택 매각 대금이 즉시형 보험료의 재원이 되는 반면, 미국 메디케이드(Medicaid, 저소득층 의료보장)는 일정 한도까지 주택을 자격 판정에서 제외해 돌봄 시작 시점에 목돈이 생기는 구조가 약했음(〈표 1〉 참조)
 - 요양시설 입소자의 60% 이상이 메디케이드에 의존하며, 주택을 보유한 채 금융자산만 소진한 뒤 메디케이드로 넘어가는 경로가 일반화됨
- 영국은 건강상태를 반영하는 손상체 연금시장과 재보험사의 심사 인프라가 발달했으나, 미국은 개인 종신연금시장이 상대적으로 작고 보험규제가 주별로 이루어져 즉시형을 뒷받침할 기반이 부족했음

○ 그러나 사전적립형 장기요양보험 시장이 위축되고 메디케이드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이미 돌봄이 필요해진 고령층의 돌봄 재원 공백이 부각됨

- 민간 장기요양보험은 개인 판매가 1990년 약 38만 건에서 2002년 약 75.5만 건으로 늘었으나, 이후 가격 오류와 보험료 인상, 보험회사 철수가 이어지며 위축됨
 - 금리 하락, 예상보다 낮은 해지율, 높은 돌봄 발생률로 장기 가격 가정이 크게 어긋나 보험료 인상이 반복되었고, 단독형 가입자는 매년 1~3%씩 줄어 2024년 말 약 580만 명이 됨[7)]
- 이후 연금보호법(Pension Protection Act)을 통해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에 장기요양 특약을 결합한 상품의 장기요양 급여를 2010년부터 비과세하는 등 대안을 모색했으나, 이 역시 건강할 때 가입하는 사전적립형으로 이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상품 개발과 정책적 관심은 제한적이었음[8)]
- 한편 2025년 7월 제정된 OBBBA(P.L. 119-21)에 따라 2028년부터 장기요양 메디케이드 자격에 물가연동 없는 주택 지분 100만 달러 상한이 적용되고(§71108), 2027년 신청분부터 소급 보장 기간이 신청 월 이전 3개월에서 2개월(확대 성인은 1개월)로 단축됨(§71112)[9)]
- 이에 따라 메디케이드를 전제로 한 돌봄 재원 계획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영국처럼 주택이 돌봄 재원으로 활용될 여지가 커짐

7) Milliman(2025. 12),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ndustry through 2024: Summary statistics and observations from the Experience Reporting Forms"
8) Milliman(2009), "Annuity/Long-term Care Insurance Combination Products"; Milliman, "Quite the combination: Hybrid products offer more effective safety net for seniors"; InvestmentNews(2010. 3. 28.), "Genworth launches another hybrid annuity"
9)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P.L. 119-21)는 2025년 7월 4일 제정된 미국의 대규모 예산조정법으로, 감세 연장과 함께 메디케이드 지출 축소를 담고 있음

○ 이에 이미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개인별 의료심사에 기반한 즉시형 상품이 출시되기 시작함

- Genworth는 2016년 영국 즉시형 공급자인 Partnership과 제휴해 영국 상품과 유사한 의료심사형 즉시연금을 출시했으며, 70~95세 중 곧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반 즉시연금보다 20~50% 높은 연금을 지급함[10)]
 - Americo는 2010년대 후반 일상생활동작(ADL) 2개 이상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인지장애로 감독이 필요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일시납 즉시형 장기요양보험을 출시함[11)]
- Lumos Insurance는 2026년 8월 이미 유료 돌봄을 받는 70~95세를 대상으로, 의료기록·기능 상태·주 돌봄자 면담에 기반해 돌봄비와 기존 소득의 차이를 메우는 즉시형 연금을 출시함[12)]

4. 우리나라 사적 돌봄 대비 수단의 현황과 한계

○ 국내 민영 장기요양보험은 건강할 때 미리 가입해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전적립형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이나 치매 진단 등 약관상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진단비(일시금)와 매월 정액의 급여를 지급함

- 매월 지급하는 담보는 재가·시설급여를 실제로 이용한 달에 한해 정액을 지급하는 이용 조건부 구조이거나, 지급기간·횟수가 정해진 확정기간형이 많으며, 사망 시까지 지급하는 종신형 간병연금은 일부 상품에 한정됨
- 보험기간도 80세·90세·100세 등 만기가 정해진 경우가 많아, 초고령기에 돌봄이 길어지면 보장이 먼저 끝날 수 있어 국내 사전적립형 상품은 돌봄 발생의 위험은 보장하지만, 돌봄 기간이 장기화되는 위험은 일부만 이전함

○ 사전적립형 장기요양보험은 여러 국가에서 공적 제도의 영향과 가입·위험 발생 시점 간 긴 시차, 위험 발생의 불확실성 등으로 활성화에 한계를 보여 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장기요양보험 퍼즐'로 논의되어 왔음[13)]

- 수요 측면에서는 위험 발생 시점과 여부가 불확실해 가입 필요성을 체감하기 어렵고, 공적 지원이나 가족 돌봄에 대한 기대, 장기간의 보험료 납입 부담으로 가입이 저조하고 중도 해지 가능성도 커짐
- 공급 측면에서는 돌봄 발생률·기간·비용 상승률·해지율·금리 등을 장기적으로 예측해야 하므로 가격 산정 오차와 수익성 변동 위험이 크며, 이에 따라 지급 기간과 보험기간을 제한해 위험 노출을 줄이려는 유인이 발생함

○ 즉시형 장기요양연금은 가입과 위험 발생 시점 간 시차, 보장 대상 위험, 개인별 기대여명의 반영 방식 등에서 사전적립형 장기요양보험과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를 통해 사전적립형의 한계를 일부 보완할 수 있음

- 수요 측면에서는 돌봄 발생 이후 가입하는 구조로 위험의 불확실성과 장기간의 보험료 납입·유지 부담을 줄이고, 개인별 건강상태와 기대여명을 반영한 연금액 산정을 통해 가입 유인을 높일 수 있음(〈표 2〉 참조)
 - 사전적립형은 가입 시점의 위험률과 요율 산정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되는 반면, 즉시형은 가입 시점의

10) InvestmentNews(2016. 9. 1.), "Genworth debuts new annuity for long-term-care coverage"
11) ThinkAdvisor(2017. 12. 12.), "Americo Introduces a Single-Premium Immediate LTCI Policy"
12) Lumos Insurance(2026. 8. 4.), "Lumos Insurance Introduces the Immediate Care Plan to Help Families Fund Long-Term Care"
13) Brown, J. R. & Finkelstein, A.(2008), "The Interaction of Public and Private Insurance: Medicaid an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Market", *American Economic Review*, 98(3); 송윤아(2025), 「장기요양 이해도 제고를 통한 노후준비의 실효성 강화」, 『KIRI리포트』, 보험연구원

건강상태와 기대여명을 반영해 연금액을 산정할 수 있어, 동일한 보험료 등 조건에서는 기대여명이 짧을수록 더 높은 연금액을 지급할 수 있음

- 공급 측면에서는 돌봄 위험이 현실화된 시점의 건강상태와 기대여명을 반영함으로써 장기 위험 예측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개인별 위험에 부합하는 상품 설계를 가능하게 함
- 단, 조기 사망에 따른 보험료 손실 가능성과 돌봄 기간의 개인 간 편차는 두 상품 모두에 존재하는데, 즉시형은 보험료를 일시에 선납하므로 조기 사망에 따른 손실이 상대적으로 크게 체감될 수 있음

○ **정부는 노후소득과 돌봄비 마련을 위해 주택연금,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탁 등 보유자산의 생전 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단만으로는 돌봄 장기화에 따른 돌봄비 부담과 지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구체적으로, 첫째, 주택연금·사망보험금 유동화·신탁은 보유자산을 현금흐름으로 전환하거나 관리하는 수단으로, 돌봄 필요에 따라 지급액이나 자산 활용 방식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돌봄 기간과 비용의 불확실성이 가입 후에도 상존함
- 둘째, 기존 자산 활용 수단은 돌봄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지급 구조와 규모가 사전에 정해져 있어 돌봄 개시 후 지출이 급증하거나 돌봄이 장기화될 경우 추가 비용을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특히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생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방식으로, 상품별 지급 기간과 조건에 따라 돌봄이 장기화될 경우 유동화 지급이 먼저 종료될 수 있음
- 셋째, 주택연금과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지급액 산정 시 개인의 건강상태를 반영하지 못해, 기대여명이 짧은 돌봄 필요자에게 그 위험에 상응하는 높은 지급액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음
 - 주택연금은 평균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지급이 분산되어 월지급액이 간병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일정 기간 동안 사망보험금이 할인된 수준으로 지급되어 돌봄비용 재원으로서의 효율성이 낮음
- 넷째, 주택연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유동화 대상 종신보험 계약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해당 자산이나 보험계약이 없는 고령자는 이용하기 어려움
- 마지막으로, 주택연금과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인지·판단능력이 저하된 이후에는 지급된 자금이 돌봄에 쓰이도록 관리하기 어렵고, 이를 보완할 신탁은 생전 돌봄비 관리 용도로는 아직 거의 활용되지 않음

〈표 2〉 사전적립형 장기요양연금과 즉시형 장기요양연금 비교

구분	사전적립형 장기요양연금	즉시형 장기요양연금
상품 성격	장기요양 상태를 보장하는 정액형 보장성보험	돌봄 필요자 대상 손상체 종신연금
가입 대상	가입 심사를 통과한 건강한 사람	이미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
가입 시점	건강한 상태에서 사전 가입	돌봄 필요 발생 후 가입
보험료	장기 분납(납입 기간 10~20년 이상)	일시납
보장 위험	① 돌봄 발생 여부 ② 돌봄 지속 기간	돌봄 지속 기간(남은 기대여명)
지급 사유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 약관상 요건 충족	가입 시 돌봄 필요 확인 후 즉시 또는 유예기간 뒤 지급
지급 형태·기간	월정액 지급. 종신형은 장기요양 상태 유지 등 약관상 요건 충족 시 종신 지급	월정액 연금, 일반적으로 사망 시까지 지급
지급 대상	피보험자 본인에게 현금 지급	등록 돌봄제공자에게 직접 지급(영국 비과세 요건)
가격 결정	돌봄 발생률·지속 기간, 해지율·금리 등 장기 가정에 기초	개인별 건강상태와 기대여명 추정에 기초
건강상태 반영	가입 심사 시 건강상태에 따라 가입 거절·할증 가능	개인별 건강상태를 반영하며, 기대여명이 짧을수록 동일 보험료 대비 연금액이 높아질 수 있음
물가 대응	가입 시 정한 금액(일부 체증형)	고정률 또는 물가연동 증액 옵션 선택 가능
해지	가능(해지환급금, 무해지형은 적거나 없음)	불가(30일 청약철회 이후)
조기 사망 시	보험료 소멸(사망보장 결합형은 사망보험금)	보험료 소멸(자본보호 옵션 시 일부 반환)
보험회사 주요 위험	장기간에 걸친 돌봄 발생률·기간·비용 예측 오류, 해지율·유지율 및 금리 가정 오차, 역선택	개인별 기대여명 추정 오류 및 실제 생존기간의 편차
소비자 주요 한계	사전에 가입해 장기간 유지해야 하며, 실제 돌봄비용과 급여액 간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	고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해야 하고, 조기 사망 시 보험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보호 대상	건강할 때 사전 대비하고 계약을 유지한 사람	사전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돌봄이 필요해진 사람

주: 사전적립형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연금을 지급하는 정액 연금형 상품을, 즉시형은 영국 즉시형 장기요양연금(INA)을 기준으로 함
자료: 저자가 작성함

5. 결론 및 시사점

○ 이미 돌봄이 필요해진 고령층이 돌봄 장기화 위험을 이전하고 자신의 기대여명에 맞는 돌봄비용을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중산층 고령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즉시형 장기요양연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자산조사 없이 급여를 제공하지만, 본인부담금 감경은 저소득층 등에 한정되어 그 외 이용자는 법정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부담하며, 수가 인상과 재가급여의 이용 한계로 돌봄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음
 - 요양시설의 장기요양 1등급 월 급여비용(30일 기준)은 2008년 약 115만 원에서 2026년 279만 원으로 연평균 약 5% 증가했으며, 법정 본인부담금도 약 23만 원에서 56만 원으로 늘어남

- 요양인력 처우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인력 배치 기준 강화로 급여수가는 지속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크며, 정률 본인부담 구조상 본인부담금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기준 약 251만 원으로, 3시간짜리 방문요양을 월 최대 44회(하루 평균 약 4.4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어 나머지 돌봄은 가족이나 개인 간병인으로 메워야 함

• 기존 자산 유동화 정책과 경쟁하기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자금, 또는 주택 처분 대금을 돌봄이 필요해진 시점에 즉시형으로 전환하는 경로를 마련하고, 판단능력 저하에 대비해 신탁과 결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급 방식에 즉시형을 추가해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유동화 대상 금액을 같은 보험회사의 즉시형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중산층 고령자의 사적 돌봄 대비는 공적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즉시형 장기요양연금에 대한 세제 등 정책적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자산조사가 없어 영국처럼 공적 지원 개시 시점을 늦추는 효과는 없으나, 돌봄 장기화로 자산이 소진되어 본인부담 감경이나 의료급여 대상으로 편입되는 것을 막고 공적 보장 확대 요구를 줄여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 사전적립형 장기요양보험은 보험금이 비과세이고 근로소득자의 보장성 보험료(연 100만 원 한도)도 세액공제되는 반면, 즉시형은 연금보험으로 분류될 경우 종신형 연금 비과세 요건(연간 수령 한도, 계약자 동일 요건) 때문에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음

- 또한, 사전적립형에 적용되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큰 일시금을 내는 즉시형에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같은 수준의 지원이라도 방식을 달리해야 함

○ **보험업계는 즉시형 상품의 개발·인수 역량을 높이고, 상품과 지급 체계를 국내 돌봄 환경에 맞게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는 건강상태를 반영하는 손상체 연금시장이 없으므로 장기요양등급별·질환별 사망률과 돌봄 이용 기간 통계를 구축해야 하며, 초기에는 영국처럼 재보험사의 심사 지원과 위험 인수를 활용할 수 있음

•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즉시형 장기요양연금은 개인별 기대여명을 반영해 지급액을 산정함으로써, 일반 연금시장과 사전적립형 장기요양보험 시장 모두에서 배제되던 돌봄 필요 고령층을 고객층으로 편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짐

- 일반 종신연금은 개인별 건강상태와 무관하게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가격이 정해져 기대여명이 짧은 돌봄 필요자의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므로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음
- 사전적립형 장기요양보험은 건강할 때 수십 년 앞서 가입해야 하므로 이미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인수심사 단계에서 가입이 거절되며,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금리·해지율·돌봄 발생률·돌봄비용 상승 등 장기 가정의 불확실성이 커 가격 산정 오류와 보험료 인상 위험을 안게 됨

• 장기요양기관 직접 지급을 기본으로 하되, 개인 간병인 고용 비중이 큰 국내 재가·간병 시장까지 포괄하려면 지급 대상 공급자를 식별할 기준이 필요함

• 아울러 영국에서 평생 돌봄비 상한제가 법제화된 뒤 연기와 폐지를 거듭하며 상품 가치가 흔들렸듯이, 장기요양 본인부담 정책이 바뀔 가능성을 상품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